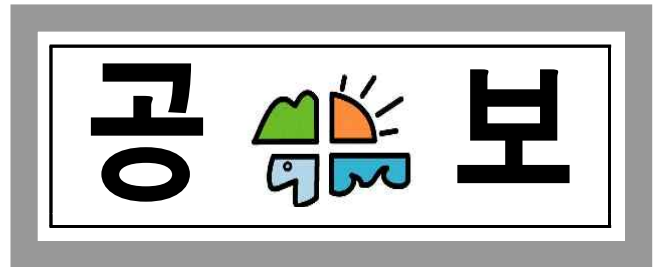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제1306호 2021년 1월 15일(금)

## 예 규

-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 ..... 2

## 공 고

- 공인 폐기사항 공고 ..... 4
-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송달공고 ..... 5

## 입법예고

-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월 15일

속초시장 김 철 수

속초시 예규 제612호

###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복지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입소자격 및 운영방법)** ① 합숙소의 입소자는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도자와 선수의 합숙소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와 선수는 취침 및 휴식을 목적으로 합숙소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③ 합숙소는 1인 1실(또는 2인 1실) 형태 등 국토교통부의 최저 주거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제4조(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사용자 및 관리자로서 합숙소를 유지 관리하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사적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③ 입소자는 제2항제2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시할 때
3. 제4조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운영비의 부담)** ① 합숙소 입소 선수에 대하여는 대부료(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합숙소에 부과되는 각종 공공요금과 유지 관리비는 시에서 이를 부담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 속 초 시 장

### 1. 공인 폐기 사유

— 「속초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

### 2. 공인명 및 인영 : 1개

| 구분 | 공 인 명         | 인영                                                                                  | 규격        | 사용일 또는 폐기일<br>(최초사용일)          | 비고 |
|----|---------------|-------------------------------------------------------------------------------------|-----------|--------------------------------|----|
| 폐기 | 속초시문화진흥기금출납원인 |  | 1.8×1.8cm | 2021. 1. 15.<br>(2016. 7. 22.) |    |

## 공 시 송 달 공 고

속초시 소유의 공유재산 (속초시 노학동 1000-241, -242 번지)에 불법지장물(비닐 하우스)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공유 재산 무단점유 관련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통지를 하였으나, 수령거부 등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15.

## 속 초 시 장

1.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공시송달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 2021. 1. 15. ~ 2021. 1. 29. (15일간)
4. 공고대상

| 소 재 지                  | 무 단 점 유 내 용 |                       |       | 비 고 |
|------------------------|-------------|-----------------------|-------|-----|
|                        | 점 유 자       | 주 소                   | 점유대상  |     |
| 속초시 노학동 1000-241, -242 | 최*근         | 강원도 속초시<br>바람꽃마을1길 ** | 비닐하우스 |     |

### 5. 공시송달내용

가. 무단점유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통지를 하였으나, 이행

되지 않아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합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귀하께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 033-639-2421)

##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1. 1. 13.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반영 및 이용수요에 부응하여 이동수단의 다양화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내지 제6조)
-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안 제7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안 제8조)
-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안 제9조)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및 연장(안 제12조 내지 제13조)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안 제14조)

-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안 제15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안 제16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안 제17조)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수탁자의 의무(안 제19조)
- 교육·예산의 확보·수당 및 여비(안 제20조 내지 제22조)

####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2.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 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 연락처 : 전화(033-639-2368), 팩스(033-633-5006), 전자문서([ksh7104@korea.kr](mailto:ksh710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행정팀(033-639-23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통 및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심장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 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

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 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8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속초시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가. 관내 요금: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나. 관외 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강원도 관할 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및 성희롱 예방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                                    |      |      |                                     |         |     |       |
|-----------------------------------------------------------------------------------------------------------------------------------------------------------------------------------------------------------------------------------------|----------|------------------------------------|------|------|-------------------------------------|---------|-----|-------|
| 접수<br>번호                                                                                                                                                                                                                                |          |                                    |      |      | 결<br>재                              | 담당자     | 담당  | 과장    |
| <b>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b><br>※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성별  | (남/여) |
|                                                                                                                                                                                                                                         | 주 소      |                                    |      |      |                                     |         | 관계  |       |
|                                                                                                                                                                                                                                         | 전화번호     |                                    |      |      | 휴대폰번호                               |         |     |       |
| 이 용<br>대상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성별  | (남/여) |
|                                                                                                                                                                                                                                         | 주 소      |                                    |      |      |                                     |         |     |       |
|                                                                                                                                                                                                                                         | 전화번호     |                                    |      |      | 휴대폰번호                               |         |     |       |
| 유 형                                                                                                                                                                                                                                     | 교통약자 유형  | <input type="checkbox"/> 장애( 장애 급) |      |      |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         |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일상생활상태   | 독립                                 | 부분도움 | 완전도움 | 의사소통                                | 가능      | 불가능 |       |
| 생활형태                                                                                                                                                                                                                                    | 휠 체 어    | 전동                                 | 수동   | 없음   | 장애인차량<br>또는 승용자동차                   | 본인      | 보호자 | 없음    |
|                                                                                                                                                                                                                                         | 거주형태     | 단독주택                               | 연립   | 아파트  | 국민기초생활<br>보장 유·무                    | 급여종류( ) |     | 해당무   |
|                                                                                                                                                                                                                                         | 가족(동거인)수 | 명                                  |      |      | 보 조 인                               | 있음      | 없음  |       |
|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따라 특별교통 수단<br>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br/><br/>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br/>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div><br><b>속초시장 귀하</b> |          |                                    |      |      |                                     |         |     |       |
|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          |                                    |      |      |                                     |         |     |       |

210mm×297mm

##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과 또는 속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 033-639-2368)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속초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